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사회복지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신설되는 경인청 제2검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으로 상향하여 배정하며,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정원 2명(8급 2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7급 2명)을 상호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회복지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 3 중 행정주사보 “50”을 “52”로, 행정서기 “8”을 “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주사보 “49”를 “51”로, 행정서기 “7”을 “5”로 한다.
별표 3의4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보 “273”을 “271”로, 행정서기 “317”을 “319”로 한다.
별표 6의2 중 행정사무관 “55”를 “56”으로, 행정주사 “221”을 “220”으로, 행정주사보 “284”를 “282”로, 행정서기 “324”를 “32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7월 31일 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4와 같으며, 별표 3의4의 정원 중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3과 같다.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50</u>	<u>52</u>	+2
·	·	·	
·	·	·	
행정서기	<u>8</u>	<u>6</u>	-2
·	·	·	
·	·	·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49</u>	<u>51</u>	+2
•	•	•	
•	•	•	
행정서기	<u>7</u>	<u>5</u>	-2
•	•	•	
•	•	•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273</u>	<u>271</u>	-2
•	•	•	
•	•	•	
행정서기	<u>317</u>	<u>319</u>	+2
•	•	•	
•	•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55</u>	<u>56</u>	+1
·	·	·	
행정주사	<u>221</u>	<u>220</u>	-1
·	·	·	
·	·	·	
행정주사보	<u>284</u>	<u>282</u>	-2
·	·	·	
·	·	·	
행정서기	<u>324</u>	<u>326</u>	+2
·	·	·	
·	·	·	